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WTO규범과의 충돌가능성

- 탄소세(carbon taxes)를 중심으로*

이영희**

차 례

- I. 서
- II.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의 개관
- III. 기후변화대응조치로서 탄소세와 WTO규범의 상충성 검토
- IV. 결

[국문초록]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온실가스감축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되었다. 현재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국들은 국내적으로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역관련 기후변화 대응조치는 온실가스감축의무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한편, 비차별을 주된 원칙으로 하는 WTO규범과 상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국제무역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타국과의 첨예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탄소세'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로 거론되고 있으나 WTO규범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통상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 이 논문은 한국환경법학회가 주최한 「제1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0년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제 2010-0377호).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I. 서

2010년 3월 27일 저녁 8시 30분부터(현지시각) 1시간동안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서울 청와대 등 지구촌 곳곳이 어둠에 물렸다. 이는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이 주관하는 국제환경운동인 '지구촌 불끄기(Earth Hour)행사로서,¹⁾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이라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각국 정부에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일반인들의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7년 시드니에서 최초로 개최된 뒤, 매년 참여국가, 도시 및 인원의 수가 급증하여 올해에는 무려 128개국과 수억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이 같은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의 구체적 결과물로서 1992년 리우 데 자네이루 UN환경개발회의에서 UN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채택되었고, 동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온실가스감축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되었다.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 이른바 '포스트-교토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초유의 국제적 관심과 기대 속에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태의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가 도출되어 2010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포스트-교토 체제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국들은 국내적으로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들도 기

1) 동 행사는 개최년도인 2007년에 220만 명이 참가했고, 2008년에는 5천만 명, 2009년에는 88개국 4천 여도시에서 수억 명이 자발적으로 지구촌 불끄기(Earth Hour)행사에 참여했다. 올해는 2009년보다 40 개국이 증가하였고 개인과 정부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대한항공 등 기업들도 일제히 동 행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참가하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www.earthhour.org/> 및 www.earthhourkorea.org 참조(2010. 5. 4. 검색).

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감축의무 및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혹은 조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이행방법은 각국의 주권사항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데, 일부 무역관련 기후변화조치들은 기존의 다자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²⁾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조치가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비차별(non-discrimination)을 주된 원칙으로 하는 WTO규범과 상충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유로운 국제무역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타국과의 첨예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의 비중이 높고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비록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 속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대응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일례로 EU는 이미 에너지·자동차·전자·화학제품 분야 등에서 다양한 기후변화대응조치를 도입하고 있는데, EU에 자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 같은 EU의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수출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³⁾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서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목표를 천명하였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당면과제로 부상하면서 다자간 환경협약은 2010년 현재 25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 약 20개 정도가 무역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그 중 한국이 가입한 협약은 56개이며, 국제적으로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협약은 기후변화협약(UNFCCC), 오존층 파괴물질을 특정해 소비·생산 및 전폐 스케줄 설정에 따른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몬트리올 의정서(The Montreal Protocol),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무역규제에 관한 협약(CITES; The Convention for regulating int'l trade in certa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animals and plants), 유해폐기물 47종의 국가간 수출입 국경간 이동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바젤협약(The Basel Convention), 생물다양성협약(The Biodiversity Convention) 등이 있다.

3) EU의 대표적인 환경규제정책으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System) 및 전기 및 전자기기의 처리 및 재활용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4개 중금속과 PBB, PBDE 등의 2개 내화제 등 6개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유해 정도가 낮은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RoHS(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를 들 수 있다. 한국의 노트북 부품업체인 A사는 유럽기업에 납품한 일부 부품에서 납이 검출돼 납사용을 금지하는 RoHS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량 반품조치를 당해 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며, LCD모니터 부품을 제조하는 B사도 유럽에 수출한 부품에서 납이 검출되어 5억 원어치의 제품을 반품당한 바 있다. 배성규, “EU발 글로벌 녹색규제 태풍” (2009. 5. 20일자 조선일보).

과 그 시행령을 도입하여 다양한 기후변화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한국의 연비규제강화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자동차의 수출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으로 비판한 바 있다.⁴⁾

이처럼 각국의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조치는 각국의 경제성장과 국제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국제통상에 관한 법체계로서 WTO규범과의 충돌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경감 및 적응’의 주축이 되고 있는 법률체계로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살펴보고,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현황을 한국과 EU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로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WTO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국제통상법적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II. 기후변화 협약·교토의정서의 개관

1. 기후변화협약(UNFCCC)

(1) 의의 및 기본원칙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⁵⁾에서 채택되었으며 2010년 현재 한국을 비롯

4) 한국의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자동차 평균 연비 목표를 리터당 17km로 삼고 시행기간을 2012~2015년 4년으로 계획한 것이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 불리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0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비판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4월 14일자 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40141091&intype=1> (2010. 5. 4. 검색).

5)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는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고 172개국이 참가하였다. 동 회의에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해 최초로 지구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의제21(Agenda 21), 기후변화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생물다양성보존협약

하여 196개국이 가입해 있는 기후변화협약은⁶⁾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시스템에 교란을 발생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⁷⁾ 동 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그리고 선진국들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 협약이다.⁸⁾

동 협약은 제3조에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조치를 취함에 있어 당사국들이 따라야 할 주요원칙들을 표방하고 있는데, (i)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⁹⁾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 (ii)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조치나 위장된 무역제한을 구성하는 기후변화대응 조치 금지¹⁰⁾ (iii) 사전주의조치(precautionary measures)¹¹⁾¹²⁾시행의 원칙 (iv) 개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산림원칙(the Statement of Forest Principles)이 채택되었다. 동 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지구적 노력의 산물인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http://www.un.org/geninfo/bp/enviro.html> 참조(2010. 5. 4. 검색).

6) 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참가국 172개국 중 154개국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고,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3년에 12월 14일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47번째로 가입하였다. 이처럼 동 협약에 많은 국가들이 가입한 사실은 지구온난화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공감대가 마련되었²개반영하는 한편, 부속서 1의 선진국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표가 구속력이 없는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점이 큰 영향²개끼쳤다. 정서용, “기후변화협약 체제와 중, 부전력 산업”, 『서울국제법연구』, 제10권, 제1호, 2003, 35면. http://unfccc.int/parties_and_observers/items/2704.php 참조(2010. 5. 4. 검색).

7) 기후변화협약 제2조 참조.

8) 성재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제2호, 1999, 169-170면 참조.

9) 동 원칙은 리우선언 원칙 7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근 외, 『국제법』, 박영사, 2010, 771-773면 참조.

10) 기후변화협약 제3조 제5항에 규정된 동 구절은 GATT 일반적 예외 조항인 제XX조 두문(Chapeau)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문구인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기후변화 협약 제3조 제3항에서 당사국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예측, 예방 혹은 최소화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축소시키기 위해 사전주의 조치(precautionary measures)를 채택해야 한다(should)고 규정하고 있다. 심각하거나 회복불가능한 손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 없다는 이유로 사전주의 조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비용효과적인 조치로서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 규정은 리우선언 원칙 15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주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리우선언 원칙 15에는 동 규정과 달리 ‘사전주의 조치’(measure)가 아닌 ‘사전주의 접근법’(precautionary approach)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리우선언 원칙 15(precautionary principle)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order to protect the

도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v)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¹³⁾의 보장 원칙 등이 그것이다.

협약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함께 산업혁명이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사용된 화석연료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재정·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협약은 부속서 I국가와 부속서 II국가, 비부속서 국가로 구별하여 공동의무 외에 특정의무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environment, *the precautionary approach* shall be widely applied by States according to their capabilities. 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all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cost-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밑줄 및 강조 첨가), 사전주의 원칙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는 James Cameron & Jili Aboucha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 Fundamental Principle of Law and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vol. 14(1991), pp. 1-27; 장신, "국제법상 사전주의 원칙의 법적성격과 그 적용," 「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 제1호, 1999, 333-348면; 성재호,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주의 원칙,"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제2호, 1998, 129-141면 등 참조.

- 12) 사전주의 원칙이 반영된 WTO규범으로 SPS협정 제5조 제7항을 들 수 있다. 동 조항에 따라 WTO회원국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WTO사건으로 EC-Hormone사건에서 EC는 문제의 SPS조치의 근거로서 SPS협정 밖의 일반 국제관습법으로서 사전주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이에 대해 국제환경법 이외의 영역에서의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면서 동 사건에서는 사전주의 원칙이 SPS협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상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EC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AB report, WTO/DS26/AB/R, para. 125 참조. 또한 Erich Vranes는 사전주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의 심사에서 그 엄격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Erich Vranes, *Trade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Oxford Press, 2009, pp. 260-3 참조.
- 13)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는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세대의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ies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Philippe Sands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 '국제관습법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Philippe Sands,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2nd ed., New York: ilibrigde UniversicomPress, 2003, p. 254 참조. 새우-바다거북사건(Shrimp/Turtle case)에서 WTO 상소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동 개념의 성격을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및 환경보호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US-Shrimp Case, *Appellate Body Report*, WT/DS58/AB/R, 1998, para. 129 참조.

(2) 주요 내용 및 평가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은 부속서 I국가¹⁴⁾와 부속서 II국가¹⁵⁾, 비부속서 I국가¹⁶⁾로 구분할 수 있다. 동 협약 제4조는 당사국의 의무를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되는 공통 의무와 부속서 I국가와 부속서 II국가에게 각각 적용되는 특정의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무사항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력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¹⁷⁾를 작성하여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에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14) 부속서 I국가에는 일찍이 산업화를 진행시켜 기후변화에 관해 역사적 책임을 갖고 있는 1992년 협약 채택당시에 OECD회원국이었던 선진국과 러시아연방, 발틱해국가, 중동부 유럽국가들로 구성된 경제체제전환국가(EIT: Economies in Transition)들이 포함되며 현재 40개국과 유럽연합(EU)로 구성된다. 이 중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감축의무국은 터키와 벨로루시를 제외한 38개국과 EU이다. http://unfccc.int/parties_and_observers/items/2704.php 참조(2010. 5. 4. 검색)
- 15) 부속서 II국가란 부속서 I국가 중 경제체제전환국가(EIT)들을 제외한 OECD국가로 24개국과 EU로 구성된다. 미국은 교토의정서 기준을 철저히하였지만 기후변화협약상 부속서 I국가이자 부속서 II국가이다. *Ibid.*
- 16) 비부속서 I국가(Non-Annex I Parties)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다. 흔히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 I국가를 선진국, 비부속서 I 국가를 개도국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분류가 아닐 수 있다. 부속서 I국가에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지 않는 경제체제전환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부속서 I국가에는 한국처럼 현재 OECD회원국인 국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비부속서 I국가로서 협약상 국가보고서 제출 등 공통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 *Ibid.*
- 17) 기후변화협약상 공통의무인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s) 제출에도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즉 부속서 I국가와 비부속서 I국가간에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일정(timetable of submission)이 상이하다. 부속서 I국가는 동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후 정기적으로 제출시한에 맞추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반면, 비부속서 I국가는 협약 발효 후 3년 이내에 혹은 선진국의 재정·기술지원이 이루어진 후 3년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부속서 I국가의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 시한이 2010년 1월 1일이었는데, 모나코, 터키 및 미국이 제5차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비부속서 I국가의 경우, 2010년 5월 26일 현재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137개국으로, 가장 최근에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10년 5월 26일)이다. 비부속서 I 국가 중 제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2009년 12월 14일) 유일한 국가는 멕시코로, 현재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제1차 국가보고서(1998년 12월 12일) 및 제2차 국가보고서(2003년 12월 1일)를 제출한 바 있다. http://unfccc.int/national_reports/items/1408.php 참조(2010. 5. 26. 최종검색)

이러한 공통의무와 함께 부속서 I국가는 특정의무로서 200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할¹⁸⁾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며, OECD회원국으로 구성된 부속서 II국가는 개도국에게 협약이행을 위한 자원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특별한 의무¹⁹⁾를 부담한다.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최초의 다자적 메커니즘 창설을 위한 지구적 차원의 노력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및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협약상의 의무를 달리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동 협약은 법적구속력을 결여한 권고적 의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불충분한 법체계라는 인식이 존재했다. 이에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법적구속력을 가지며 온실가스감축의 구체적 실천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²⁰⁾

(1) 주요 내용 및 의의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과 달리 부속서 I 국가 전체가 2008~2012년(제1차 공약기간)에 기준연도인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부과하는 동시에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구체적 감축목표는 차등적으로 설정하였다.²¹⁾ 동 의정서 제2조에서는 부속서

18) 기후변화협약 제4조 제2항.

19) 기후변화협약 제4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20) 공식명칭은 The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되었지만,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다. 이는 교토의정서의 발효되려면 (i) 55개국 이상의 협약당사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하고 (ii)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 I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이 전체 부속서 I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의 55%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교토의정서 제25조 제1항). 부속서 I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는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로 발효되지 못하다가 2004년 11월 부속서 I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던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에 비로서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8년 9월 25일에 가입하여 2002년 11월 8일에 UN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http://unfccc.int/kyoto_protocol/status_of_ratification/items/2613.php (2010. 5. 9. 검색)

I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는데 이용 가능한 정책과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²²⁾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B국가²³⁾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설정,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 등 교토메커니즘, 국가보고서 작성·제출·검토, 재정 및 기술 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동 의정서가 부속서 I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이행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연성체제(Flexibility System)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유연성체제(Flexibility System) - JI·CDM·ETS제도

유연성체제, 이른바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이란 선진국들이 자국 내에서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Clean and Development Mechanism; CDM),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를 도입하여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해줌으로써 선진국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의무이행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²⁴⁾

첫째, 공동이행제도(JI)란, 교토의정서 제6조²⁵⁾에 명시되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21) EU는 동 제1차 이행기간동안 8%, 미국은 7%, 일본과 캐나다는 각각 6% 감축의무를 부과 받은 반면, 호주는 그간 온실가스배출량이 적었던 것을 감안하여 8%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았고, 러시아는 1990년 수준대비 동결(0%감축)하도록 규정하였다(교토의정서 부속서 B 참조). 한편 EU 15개국 회원국은 회원국별 감축목표를 1998년 6월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 부속서 I국가 중 터키와 벨로루시는 의정서 채택 당시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고, 크로아티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등 6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 I국가에 추가되었다.

22) 에너지효율 제고, 온실가스 흡수원 및 저장소의 보호 및 증진, 지속가능한 농업 장려, 신재생에너지 사용, 환경친화기술 장려, 보조금, 조세 및 관세 등 개혁, 온실가스 배출부문 개선, 수송부문 대응, 메탄 발생 폐기물 처리 등이 그것이다. 교토의정서 제2조 참조.

23) 부속서 B국가란 교토의정서 부속서 B에 수록된 국가로 협약상 부속서 I국가들 중에서 벨라루스와 터키를 제외하면 동일하다.

24) 이 중 배출권거래제도(ETS)와 공동이행제도(JI)는 2008년부터 시행되며 부속서 I국가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청정개발체제(CDM)는 한국을 포함한 비부속서 I국가가 참여하여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교토의정서」, 유넵프레스, 2002, 21면 참조.

의무가 있는 부속서 I국가가 다른 부속서 I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단위(Emission Reduction Units : ERUs)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부속서 I국가만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비부속서 I국가인 한국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²⁶⁾

둘째, 동 의정서 제12조²⁷⁾에 규정된 청정개발체제(CDM)는 부속서 I국가가 비부속서 I국가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사업 수행에 따른 크레딧을 구입하여 의무이행에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온실가스 저감사업 수행을 통해 감축되는 인정배출량감축(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의 이전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공동이행제도와 주요내용은 유사하나, 참여대상이 비부속서 I국가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²⁸⁾ CDM 사업수행을 통해 획득한 CERs는 부속서 I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25) 교토의정서 제6조(공동이행제도)

1. 부속서 I의 당사국은 제3조상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경제부문에서 온실가스 흡수원에 의한 제거와 배출원별 배출저감 목적의 사업에 의한 배출저감 단위를 타 당사국에 이전하거나 타 당사국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6) 공동이행제도(JI)는 부속서 I국가가 다른 부속서 I국가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로,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간에 가능하면 배출량 감축단위(ERUs)를 최소량으로 엄격하게 산정하려는 상호견제관계가 존재한다. 보통 자국 내에서만 온실가스감축이 어려운 부유한 선진국이 투자국이 되고, 국내에서 온실가스감축의무 이행의 여유가 있는 러시아나 동구권 국가들이 투자유치국이 된다. 비용최소화를 위해 투자국과 투자유치국간에, 사업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배출원에 의한 배출량의 추가적 감축논의(예를 들어, 투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구매해 가면 유치국에서는 자국의 실제 배출량에 같은 양만큼 더해 주어야 이중계산의 오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기준배출량(baseline) 설정문제, 프로젝트의 감시·보고·평가방법에 대한 논의, 공동이행사업의 실적인정문제 등에 있어 이견이 존재한다. 유엔환경 한국위원회, 전계서, 23-24면 참조.

27) 교토의정서 제12조(청정개발메커니즘)

2.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 I국가에 속하지 않는 당사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협약의 궁극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속서 I당사국이 제3조하의 양적배출제한감축 공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청정개발체제하에서,

가. 부속서 I국가에 속하지 않는 당사국은 인증배출감축(CERs)을 발생시키는 사업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며,

나. 부속서 I 당사국은 제3조에 의한 수량적 배출량 제한감축을 위한 공약의 일부를 준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인증배출감축량(CERs)을 이 의정서의 당사자총회(COP)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8) 즉,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부속서 I국가에서 수행되는 J와 달리, CDM은 한국을 비롯한 주로 개도국으로 구성되는 비부속서 I국가에서 사업이 수행된다. CDM사업을 유치하는 비부속서 I국가는 온실가스

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비부속서 I국가는 부속서 I국가에게서 기술과 재정을 지원받음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²⁹⁾

셋째, 배출권거래제(EST)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인 부속서 B국가가 감축의무를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타 부속서 B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교토의정서 협상과정에서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제도이다.³⁰⁾ ETS는 비용효과성면과 기술개발 촉진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촉진하는 가격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감시 및 행정비용과 거래비용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³¹⁾ EU의 ETS는 거래가격 및 규모면에서 가장 큰 기업차원의 CO2 배출권 거래시스템이며 2005년 출범한 일본의 ETS는 비용효율적인 배출감축조치를 지향하며 국내 ETS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³²⁾

3. Post-2012체제 협상 논의동향

교토의정서의 제1차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 즉 Post-교토체제에 대한 논의가 UN, G-8, 다보스포럼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³³⁾ Post-교토협상의 큰 흐름은 두 가지로 나뉜다. EU 주도의 교토체제와 미국 주도의 기술협약체제이다.³⁴⁾ 2007년 12월 15일 발리에서 개최된 제13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보다는 가능한 감축량을 많이 발생시키려는 무임승차(free riding)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한승호,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 청정개발체제(CDM)의 이해와 활용」, (한울아카데미, 2006), 40면.

29) 이연상, 「쉽게 풀어보는 기후변화협약」, 한울아카데미, 2008, 49-52면 참조.

30) Philippe Sands, Ibid, p. 372.

31) 윤창인,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 KIEP 대외정책연구원, 2008, 45면.

32) Ibid.

33)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분석 보고서」, 2009. 12. 7면.

34) EU 주도의 교토체제는 구속적인 감축목표와 하향식(top-down) 목표설정 방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최근 UN 고위급회의를 거쳐 2007년 12월 발리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차 당사국총회(COP13)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부속국가 및 비부속국가의 구분을 선진국-후진국으로 구분하면서,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 즉 Post-교토체제에 대한 협상 로드맵을 제시하는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³⁵⁾이 채택되었다. 동 결정문은 향후 협상의 핵심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Post-교토체제관련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2009년 12월 지구촌의 뜨거운 관심속에 개최되었던 제15차 당사국총회인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감축량 목표치 결정, 지원금 규모, 감축목표치에 대한 검증방식 등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을 합의하였다. 많은 쟁점을 후속협상으로 넘겼으며 2010년 멕시코 회의에서 타결을 위해 협상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이전 대비 섭씨2도 이내로 제한하고³⁶⁾, 기후변화에 따라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개도국에게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약 300억달러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제고한 점,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특정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³⁷⁾

코펜하겐회의는 국제적 관심과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컸던 회의라는 평가가 다수 언론의 지면을 장식했다. 그러나 한국이 이번협상에서 ‘자발적 등록+국내 이행+국제적 MRV(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이라는 선구적 모델을 제시하여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교량’역할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국의 경우, 현재로서는 온실가스감축의무 대상국가가 아니지만 현재 OECD회원국이자 세계 15위권

Plan)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보다 많은 의무 감축국가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Ibid.

35) 발리행동계획은 개도국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조치를 포함한 교토의정서 중심의 변형된 체제를 담고 있다.

36)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코펜하겐 합의문에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기한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참가국들의 자발적 약속에 의존하여 UNFCCC 총회의 지지 또한 받지 못한 상황이다.

http://www.ten-info.com/Sub_Modules/tei/dir_view.asp?pg=6&dir=5&doc=03&kd=&ca=&ar=&ty=&su=&od=&col=&sw=&num=2837(2010. 5. 10. 검색).

37) 코펜하겐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http://unfccc.int/resource/docs/2009/cop15/eng/107.pdf> 참조(2010. 05. 12. 검색).

의 경제규모와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규모를 가진 국가임을 감안할 때, 향후 Post-2012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가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산업·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4.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동향

현재 각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입법과 주요정책을 표³⁸⁾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에 대해서는 한국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EU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구분	법안	주요정책	
국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환경마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국외	EU	Energy and Climate Package(2008)	CE인증제, GEEA Energy Label, EU Flower
	영국	Climate Change Act 2008	Carbon Trust, 탄소감축공약정책(CRC)
	프랑스	그르넬환경법률안 II(2009)	Velib, Bonus-Malus, Ecological New Deal,
	독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TEHG)	Blue Angel, Das Zweite Klimapaket
	미국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Green Seal, Green Vehicle Guide, 배출총량규제·배출권거래제
	일본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新기본에너지초안 발표(2010)	Eco Mark, 배출총량규제·거래제, 저배출자동차인증제, 省에너지라벨
	중국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2007)	환경표지제, 녹색보험, 녹색증권, 녹색구매제도

38) 이 표의 내용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발간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 환경규제 이슈분석 보고서」, 2009. 12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1) 한국

한국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동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인증제 절차(제19조), 녹색산업투자회사 지정요건(제17조)을 마련하고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제20조)규정,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온실가스 관리대상 업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29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절차·시기·주관기관(제30~35조)규정 등이 있다. 또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환경부에서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제37조) 하였고, 자동차 연비기준은 지식경제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환경부가 각각 정하도록 하여 환경부는 제도 운영에, 지식경제부는 친환경자동차 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⁹⁾

이에 동 시행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같은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법과 관련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자동차 연비강화 규정이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불리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면 비판을 가한 바 있다.⁴⁰⁾

(2) EU

EU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1991년에 최초로 수립된 이래 2000년에 유럽기후변화 프로그램(the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ECCP)설치, 현재는 제2차 프로그램(ECCP II)을 통해 총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⁴¹⁾ EU의 기후변화대책의 목표는

39) http://www.ten-info.com/Sub_Modules/tei/dir_view.asp?pg=6&dir=5&doc=03&kd=&ca=&ar=&ty=&su=&od=&col=&sw=&num=2831 참조(2010. 5. 14. 검색).

40)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는 자동차 평균 연비를 리터당 17km,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g 당 140g으로 규제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미국정부의 안인 리터당 15km보다 훨씬 엄격하다며 미국 자동차 업계에 불리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한국경제신문 4월 2일 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40250046> &intype=1(2010. 5. 14. 검색).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1차 이행기간동안 (2008-2012) 90년 대비 8%감축하고 2020년까지 20-40%를 감축하는 것이다.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배출권 거래제 확립,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이 있다.

에너지 효율개선과 관련하여 건물 에너지 효율증대 정책, 에너지 소비량 규제⁴²⁾,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에코디자인 제도⁴³⁾, 에너지 라벨링 제도⁴⁴⁾, 신 에너지 세⁴⁵⁾ 등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EU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보장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자동차산업분야와 관련하여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 연비 라벨링 등의 조치를 도입하였다.

EU는 전기·운송기기·기계류·섬유·화학 등 많은 분야에서 강도 높은 환경기준을 도입하고 있고, 2010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환경규제만 50여개, 2020년까지 90여개의 새로운 환경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⁴⁶⁾ 한-EU FTA 체결로 EU의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한-EU간의 통상교류에 있어 환경

41) 유럽기후변화프로그램(ECCP)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http://ec.europa.eu/environment/climat/eccp.htm> 참조(2010. 5. 14. 검색).

42) TV수상기, 비디오레코더(VCR), 수신디코더, 휴대폰 충전기, 오디오 등 5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유럽 가전제품 제조업자협회(EACEM)와 EU집행위간의 협정형태를 통해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을 규제하고 있고, 향후 이들 5개 제품 이외의 다른 전자제품에도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논문, 2007, 44-45면 참조.

43) 에코디자인이란 가전제품과 같은 에너지 사용 기기들에 대한 환경적 측면의 요건 형성에 관련된 원칙, 조건 및 기준을 정의한 신규방안으로, 동 제도에 의거하여 제조업자들은 제품의 환경적 측면의 효율성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가시적으로 보이는 곳에 명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 전 제품 간 비교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전게서, 45면.

44) 세탁기와 냉장고, 가정용 램프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 에너지 라벨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세탁기는 1996년 10월부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의 EU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냉장고 역시 10개 유형으로 나뉘어 각 유형별로 설정된 에너지 소비량을 준수하여야만 CE마킹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는 현재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사무기기들을 대상으로 'Energy Star'마크를 부착하게 하는, 'Energy Star'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nergy Star'상표가 부착된 제품은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임을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전게서, 45-46면 참조.

45) 2004년 1월부터 EU에서는 신 에너지세 제도가 발효되어, 광물류 및 석탄, 가스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제품에 에너지세가 적용되며 세율도 2004년과 2010년 두 단계로 나뉘어 강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게서.

46) 조선일보, 2009년 5월 20일자 기사 참조.

이슈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EU의 강도 높은 환경기준은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한국에 생산비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기업들은 새로운 EU의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U로 수출자체가 금지되거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지구적 과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EU를 비롯한 주요 통상국들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산업 및 무역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통상국들과 환경기준에 관한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기후변화대응조치로서 탄소세와 WTO규범의 충돌 가능성 검토

1. 교토의정서와 WTO규범의 관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와 각종 무역장벽의 감소·제거를 통한 자유무역·공정무역을 증진을 목표로 하는 WTO규범은 일견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 협약들을 비롯한 다자간 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과 WTO규범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 것으로 볼 때, '환경'과 '무역'은 더 이상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 및 '협력'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무역의 증진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첫째, 천연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분배를 가능케 하고 둘째,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자유무역을 통한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번영은 기후변화대응을 비롯한 각종 환경보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유지할 수 있는 원천의 역할을 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며 셋째, 국제적 차원에서 자유무역의 증진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러한 친환경적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접근권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지구

적 차원에서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⁴⁷⁾

다자간 환경협약과 WTO규범의 관계에 대해 각종 국제환경협정들은 그 전문에서 ‘무역과 환경정책의 상호보완성’을 언급하고 있으며⁴⁸⁾, 대표적으로 1992년 리우선언의 원칙12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GATT1947의 전문에서는 “세계자원의 완전한 이용”(the **full** use of the resources of the world)을 목표로 제시한 반면, WTO 설립협정문은 전문에서 “환경보호와 보존”, “지속가능한 발전전문에서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⁴⁹⁾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환경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더라도 환경적 관심사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도하각료선언에서 환경과 무역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하에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밝히고 있으며, WTO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상 무역관련 조치의 관계, MEA상의 사무국들과 관련 WTO위원회들 간의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절차들, 환경친화적 상품·서비스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의 감축과 철폐를 협상의제로 규정하고 있고,⁵⁰⁾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의 검토과제⁵¹⁾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자간 환경협약과 WTO규범은 추상적·일반적으로는 상호보완 및 협력을 표방하고 있고 이는 각 협약 기초자들의 환경협약과 WTO규범의 상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각종 국제환경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령이나 조치들은 WTO규범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7) WTO 부사무총장인 Rufus Yerxa가 2010년 3월 26일 런던에서 개최된 UK Public Interest Environment Law Conference 연설의 일부를 요약하였다.

구체적인 연설문은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0_e/envir_26mar10_e.htm 참조(2010. 5. 15 검색).

48)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 승인절차(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PIC)를 규정하고 있는 로테르담 협약(The Rotterdam Convention)은 전문에서 무역과 환경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동 협정과 타 국제협정(GATT/WTO규범)간에 위계서열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문구는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도 포함되어 있다.

49) WTO설립협정상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vironment”, “the **optimal** use of the world’s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50) 구체적인 내용은 도하각료선언 제31항 참조.

51) 도하각료선언 제3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역환경위원회(CTE)의 검토의제는 (i) 시장접근 관련 환경 조치들의 효과(특히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관하여) 및 무역제한-왜곡의 제거나 완화가 무역, 환경 및 개발에 이익이 되는 상황 (ii) TRIPs협정의 관련 조항 (iii)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 이다.

2. 무역관련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관련 WTO규범의 관계

기후변화대응정책은 기존의 다자환경협약상(MEAs)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의무위행을 위한 무역조치가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비차별을 주된 원칙으로 하는 WTO규범과 상충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현재로서 온실가스가 될 의무국은 아니지만, 향후 Post-2012체제에서 새로운 협약이 마련되면 온실가스가 될 의무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기후변화대응 조치와 WTO 규범과의 충돌문제가 한국에도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각국의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조치 중 국제무역과 관련되는 조치는 탄소세 등 각종 환경세, 기술규정 및 표준·라벨링, 친환경 기술산업 보조금,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유무역·공정무역을 목표로 하는 WTO규범과 상충할 소지가 있어 국제통상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후변화대응정책과 충돌가능성이 있는 WTO의 주요규범은 GATT1994⁵²⁾, 농업협정⁵³⁾,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⁵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⁵⁵⁾,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⁵⁶⁾,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⁵⁷⁾, 무역관

5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on Trade)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관련된 조항은 제1조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제III조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제XI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제XIII조 수량제한의 무차별 시행, 제XX조 일반적 예외 등이다. 탄소세 등 환경세가 동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

53)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관련 있는 조항은 제6조 국내 보조약속, 제13조 적절한 자제(Due Restraint) 및 부속서2 등이다. 환경프로그램에 따른 농업보조금은 보조금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평화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는 200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다.

54)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서 관련 조항은 제2조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제5조 위험평가 및 적정보호수준 등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SPS규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충돌될 수 있다.

55)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서 관련 조항은 제2조 기술규정의 준비·채택 및 적용, 제4조 표준의 준비·채택 및 적용, 부속서 1 등이다. 에너지 효율 기술규정 및 표준, 라벨링 제도가 동 규정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56)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서 관련 조항은 제1조 보조금의 정의, 제2조 특정성, 제2부 금지보조금(제3조~4조), 제3부 조치가능보조금(제5조~7조), 제4부 허용보조금(제8조)등이다. 친환경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에 부과되는 각종 보조금, 수출입상품에 대한 국경세조정은 동 규정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런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⁵⁸⁾ 등이 있다. 언급한 주요 기후변화 대응조치 중 탄소세는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과세하는 조치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적인 제도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WTO규범과 충돌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주요 기후변화 대응조치로서 탄소세와 WTO규범의 충돌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3. 탄소세(Carbon Tax)의 국제통상법적 검토

(1) 정의, 효과 및 유형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고려하고 있는 조치 중 하나가 탄소세이다. 탄소세란 환경세의 일종으로 화석연료의 탄소성분의 함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부과되는 일종의 소비세이다.⁵⁹⁾ 이러한 탄소세는 부과되는 대상의 범위에 따라 (i) 순수 국내조치로서 국산품 및 수입품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탄소세⁶⁰⁾ (ii) 교토의정서 비당사국 혹은 온실가스 감축

57)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서 관련조항은 제1조 범위 및 정의, 제2조 최혜국대우, 제14조 일반적 예외, 제16조 시장접근, 제17조 내국민대우 등이다. 청정 개발메커니즘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 협정과 상충가능성이 있다.

58)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서 관련 조항은 강제실시와 관련된 제30조 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 제31조 권리자의 승인없는 기타 사용 등이다.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청정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동 규정과 상충가능성이 있다.

59) 환경세는 상품의 소매단계에서 부과되는 물품세(sales tax), 각 생산공정 또는 서비스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정부가 제공하는 수수료(쓰레기 하차 등), 석유운송과 같이 일정한 행위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판매세(excise-tax) 등이 있다. 물품세와 매매되는 상품의 가액(price)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증가세인 반면 판매세는 세금의 부과대상의 양(quantity)에 부과하여 부과되는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세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종량세인 '판매세'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형, "기후변화협약과 환경세의 국경조정", 『통상법률』, 통권 제61호, 2005. 2, 134-135면.

60)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첫 번째 순수 국내조치로서 탄소세는 두 번째 유형인 일방적으로 수입품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국경 탄소세 조정에 비해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WTO규범의 비차별원칙과 충돌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해 국경에서 부과하는 ‘국경탄소세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BCA) (iii) 전세계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도입하는 경우(globalization of carbon costs)로 나눌 수 있다.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국가만이 도입하는 경우, 해당 조치는 국내 에너지가격을 상승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해당 국가의 에너지집약적 상품은 국내시장 및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즉,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의 상품은 국내시장 및 국제시장에서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의 상품과 경쟁해야 하는데, 가격경쟁력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의 국내기업들은 경쟁력 상실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탄소누수’(carbon leakage)⁶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탄소누수는 지구적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목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자국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탄소누수의 문제점,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약’에 동참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서 논의되고 있는 조치가 두 번째 유형인, 국경세조정⁶²⁾의 일환인 ‘국경

61) 국제탄소누수(international carbon leakage)란 탄소 집약적 산업의 이전(actual migration of emission-intensive industries), 혹은 탄소집약적 제품의 시장점유율의 이전(a transfer of market share in emission-intensive goods)을 통해 탄소규제조치를 도입하는 국가(climate-regulated economies)에서 탄소규제조치가 완화된 혹은 채택되고 있지 않은 국가로 온실가스의 재배치(relocation of GHGs)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ICTSD, *Competitiveness and Climate Policies : Is There a Case for Restrictive Unilateral Trade Measures?*, Information Note Number 16 (December 2009), p. 2.

62) 국경세조정이란 서로 다른 국가영역에 존재하는 상품생산자들 사이에 과세제도의 차이가 야기하는 경쟁력의 왜곡을 시정하여 동등한 경쟁여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종의 국내상품(like product)에 부과하는 조세를 수입상품에 대하여 과세하고 수출상품에 대하여 내국세를 감면 또는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경세조정은 각국의 조세제도의 무역중립성(trade neutrality)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무역대상국사이에 통일적인 조세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국경세조정은 이중과세(double taxation) 혹은 허점을 방지함으로써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의 대등한 경쟁조건(level-playing field)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Taxes and Charges for Environmental Purpose - Border Tax Adjustment*, WT/CTE/W/47, 1997. May. 2, para. 24.

탄소세조정(BCA)이다. 이하에서는 국가별 탄소세 도입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국경탄소세조정과 WTO규범의 충돌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2) 국가별 탄소세 도입동향⁶³⁾

탄소세 제도와 관련한 국가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EU의 경우 EU배출권거래제(ETS)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에 탄소세를 부과하여 그 세수(稅收)를 기후변화조약 내에서 개도국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실현되려면 EU 27개국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EU개별회원국 차원에서는 핀란드가 세계최초로 탄소세 제도를 도입하였고,⁶⁴⁾ 덴마크⁶⁵⁾·노르웨이·아일랜드⁶⁶⁾·스웨덴⁶⁷⁾은 동 제도를 이미 시행중에 있다. 프랑스는 2010년부터 석유, 석탄, 가스 사용에 대하여 탄소배출 1톤당 17유로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기후-에너지 기여금 제도(La Contribution Climat Énergie)’를 발표하였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 국가에서 제조1상품에 대한 프랑스 및 EU차원의 국경 탄소세 별 *carbon tax at border* 내용 도입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그러나 탄소세법안(La Loi de Finance pour 2010)에 대해 위헌판결⁶⁸⁾이 내려져 수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다. 영국 이루어세가 자주권에 해당한다는

63) 무역-환경 정보네트워크(TEN)의 홈페이지에(<http://www.ten-info.com>) 게재되어 있는 무역환경정보-정책동향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64) 핀란드는 1990년이래로 화석연료, 전기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1990년에는 이산화탄소 톤당 4.1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11.77유로, 2008년에는 18.05유로로 인상하였다. “유럽일부 탄소세 도입…美中은 눈치만”(서울신문 2010년 1월 12일자).

65) 덴마크는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세 형태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1992년에 탄소세를 도입했으나 온실가스 배출감축 효과가 크지 않아 2008년 6월에 탄소세를 대폭 인상하였고,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과 미참여기업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탄소세부과 차별화조치를 단행하였다. 2005년 기준으로 톤당 12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Ibid.

66) 아일랜드는 EU 배출권거래제(ETS) 비포함부문을 대상으로 톤당 15유로 수준의 탄소세를 승인하였고 이에 탄소세는 석유, 디젤 등의 운송연료에 적용되며, 등유, LPG, 천연가스와 같은 비운송연료에의 적용은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음. Ibid.

67)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현재 톤당 108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전력발전에서 사용되는 연료에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연료에는 50%를 부과하고 있다. 에탄올, 메탄올 및 바이오연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에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Ibid.

68) 위헌판결의 이유는 동 법안의 탄소세 조항이 너무 많은 예외조항을 담고 있고, 공공부담의 형평성 원

이유로 EU차원의 . 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탄소세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반발이 상당하여⁶⁹⁾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EU의 탄소세 도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해 중국과 인도 등의 일부 국가들, 특히 개도국들은 지나친 환경규제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를 우려하는 일각에서는 탄소세와 같은 조치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들의(특히 개도국) 수출을 어렵게 하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협상을 거부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⁷⁰⁾

(3) 국경탄소세조정(BCA)과 WTO규범의 충돌가능성 검토

앞서 언급한 탄소세의 유형 중 두 번째 유형인 국경탄소세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WTO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즉 일국이 교토의정서의 비당사국 혹은 자국과 유사한 수준의 기후변화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국경에서 일방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⁷¹⁾ 이러한 국경세조정은 GATT 1994 제3조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MFN)의무 및 제III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와 충돌할 수 있어 검토가 요구된다.

(가) 국경세조정의 근거: GATT 제3조 제2항 (a)호

수입품에 대한 국경세조정의 근거는 GATT 제III조 제2항 (a)호에서 찾을 수 있다.

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톤당 17유로의 탄소세를 석유, 가스, 석탄 소비에 부과하기로 하면서 상위 기업 1000개 이상이 이미 EU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탄소세 부과에 예외조항에 포함시켰다.

69) “이대통령, 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공포안 서명”(디지털타임스 2010년 1월 13일자 신문).

70) 구경환, “녹색성장 및 환경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18권, 31호, 2009, 13면.

71) 국경탄소세조정은 수입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품에 대하여 세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산업의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자국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국경탄소세조정으로서 에너지집약적인 수출품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국경탄소세조정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가 초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WTO규범과의 충돌가능성은 분석의 편의상 수입품에 대한 국경탄소세조정에 한정하도록 한다.

동 규정에 의거하여 WTO회원국들은 동종의 국내상품 또는 해당 수입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전부 또는 일부 기여한 물품(article)에 대하여 제III조 2항에 합치되게 부과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언제든지 상품의 수입에 대해 부과할 수 있다.

WTO차원에서 국경세조정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고 있는데,⁷²⁾ 1970년 “국경세 조정에 관한 작업법”은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에 대해서만 국경세조정이 허용된다고 하였다.⁷³⁾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반영된 투입요소(inputs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final products)에 대한 내국세나 과징금이 국경세조정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대해대 이론(異論)이 없다. 그러나 최종상품에 남아있지 않은 ‘탄소’론(異이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투입요소’에 대한 내국세나 과징금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며 GATT 제III조 제2항도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나) 정당한 국경세조정의 요건 : GATT 제III조 합치성 여부

GATT 제III조 제2항 (a)호는 정당한 국경세조정의 요건으로서 GATT 제III조 제2항에 합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세가 국경세조정 대상인지 여부의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러한 국경세조정이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⁷⁴⁾에 위반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국경세조정이 될 수 없다. 즉, 수입품에

72) 간접세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며 제품의 최종가격에 전가되나, 직접세는 생산자에게 전가된다. 국경세 조정에 있어 직접세보다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간접세를 조정하는 것이 조세징수 및 관리측면에서 용이하다.

73)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re was convergence of views to the effect that taxes directly levied on products (i. e. indirect taxes) were eligible for tax adjustment.” GATT, *Working Party Report on Border Tax Adjustments*, 2 December 1970, GATT BISD 18S/97, L/3464, 1970, para. 15. 간접세에 대해서만 국경세조정이 인정된 것은 GATT서명 당시 간접세는 상품의 최종가격에 전가되지만 직접세는 그렇지 않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국경세조정작업반 보고서에서도 직접세와 간접세의 전방전가 정도에 관하여 회원국 간 많은 논쟁이 있었음이 지적되었다. 모든 조세의 전가정도는 시장조직, 경기 등 각종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간접세가 전혀 전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직접세가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전가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리,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WTO법적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제1호(통권 제116호), 2010, 167면.

74)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원칙이란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

대한 국경세조정인 국내 동종상품에 직간접적으로 부과된 내국세나 부과금에 초과(in excess of)하여 부과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직접경쟁대체관계에 있는 국내상품과 유사하게 세금이 부과(similarly taxed)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입품과 비교대상인 국내상품의 '동종성'(likeness)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문제의 국내상품과 수입품이 동종상품 혹은 직접경쟁대체상품이 아니라면 상이한 대우가 존재할지라도 이는 정당한 조치로서 GATT 제III조와의 불합치성을 논할 실익이 없다.

이처럼 동종상품이 GATT 제III조 위반판정에 있어 핵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GATT에는 동종상품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970년 국경세조정에 관한 보고서(The Report of the Working on Border Tax Adjustment)에서 국경세조정 작업반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성질(products properties, nature and quality), 제품의 최종 소비자용도(end-uses) 및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consumers tastes and habits)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case-by-case basis) '동종상품' 여부를 판정해야 함을 제시하였다.⁷⁵⁾ 이 같은 판정기준은 '한국 주세 분쟁'⁷⁶⁾, '미국 가솔린 분쟁'⁷⁷⁾ 등 일련의 GATT/WTO 패널에서 견지되어 왔다.

으로서 수입상품들에 대한 원산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 원칙과 더불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GATT의 양대 비차별원칙의 하나이다. 문제의 조치가 비재정적 조치(non-fiscal measure)인 경우 GATT 제III조 제4항이, 재정적 조치(fiscal measure)인 경우 제III조 제2항이 적용된다.

75) *Report of Working Party on Border Tax Adjustment*, BISD 18S/97, para. 18.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like") should be examined on a case-by-case basis. This would allow a firm assessment in each case of the different elements that constitute a "similar" product. (밑줄 첨가)

76) 동 사건에서 WTO패널 및 상소기구는 문제된 소주와 수입주류의 경쟁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소주와 수입주류간의 물리적 특성의 차이, 소비용도, 관세분류, 시장여건'외에도 '양자의 잠재적 경쟁성'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75/AB/R & WT/DS84/AB/R, 1999, paras. 4. 186-4. 194 참조.

77) 동 사건에서 WTO패널 및 상소기구는 미국의 재래식 가솔린(conventional gasoline)과 개질 가솔린(reformulated gasoline)의 동종성에 대해 심사하면서 제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관세분류, 대체가능성에 의존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9, WT/DS2/R, 1996 참조.

수입품에 대한 국경탄소세조정은 상품의 생산방법, 특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양에 근거하여 세금이 부과되므로, 상품무관련 PPMs(Non-Product Related PPMs)와 상품의 동종성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상품무관련 PPMs에 기초한 조치는 특히 '보호주의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것이 특히 한 나라의 수출업자들에게 타국으로의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⁷⁸⁾ 만약 수입품과 국내상품이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관세분류 등에서 동일하지만, 수입품이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즉 제품무관련 PPMs를 이유로 국경에서 탄소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WTO규범상 허용되는 조치인지 문제가 된다. GATT/WTO 판례의 지배적인 견해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품은 생산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종상품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관세분류 등이 같은 기후친화적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은 '동종상품'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NPR PPMs에 근거한 차별조치,⁷⁹⁾ 즉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국경에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경탄소세 조정은 GATT 제III조의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 GATT 제조 위반 가능성 검토

일방적인 국경탄소세조정은 GATT 제I조와도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Post-Kyoto 레짐이 설립되어 WTO 회원국이 동 레짐에의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참여국과 비참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해 상이한 국경탄소세조정을 하는 경우 이는 수입품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GATT 제I조 MFN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GATT

78) ICTSD, *supra* note 62, p. 9.

79) 상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차별조치는 'Tuna-Dolphin'사건까지는 GATT체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이보다 최근 판례인 'Shrimp-Turtle사건'에서는 상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조치 그 자체로 GATT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United-States - 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DS29/R; *United-States - Import Prohibition of Shrimp and Certain Shrimp Products*, WT/DS58/AB/R, 1998 October 12, 참조.

제조는 제III조 2항 및 4항에 언급된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WTO회원국이 제3국에 부여한 편의(advantage), 호의(favor), 특권(privilege), 또는 면제(immunity)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부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후변화 레짐'의 당사국인지 여부, 혹은 기후변화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국경에서 탄소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GATT 제I조상 '무조건'(unconditionally)의 요건에 위배되거나 혹은 제조가 금지하고 있는 '원산지'에 따른 차별'(origin-based discrimination)에 해당하여 MFN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 WTO규범틀 내에서의 조화가능성 - 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의 원용가능성

일반적인 탄소세국경조정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GATT규범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대응조치가 일견 GATT상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회원국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제XX조 (b)호⁸⁰⁾ 혹은 (g)호를 원용하여 정당화하고자 할 것이다. GATT상 의무에 위반되는 조치가 제XX조를 원용하여 정당화하려면 우선 (a)호 내지 (g)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아울러 두문(chapeau)규정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⁸¹⁾ 상기에서 검토한 탄소세가 GATT규범에 위반되는 경우 제XX조를 통해 정당화되려면, 회원국은 제XX조 (b)호⁸²⁾ 혹은 (g)호⁸³⁾의 조건을 충족하고 두문(chapeau)에 규정된 것처럼

80) 제XX조 (b)호가 원용된 사례로는 GATT 1947하에서 4건, WTO하에서 3건이 있다. GATT 1947하의 사건으로는 "Japan-Alcoholic Beverages", 1987년 ; Thailand-Cigarettes, 1990; US-Tuna I, 1991, US-Tuna II, 1994 이, WTO에서는 US-Gasoline, 1996; EC-Asbestos, 2001; EC-Tariff Preferences, 2004가 있다.

81) 제XX조의 정당화 여부에 대한 판단 순서는 US-Gasoline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제시하였고, 이후 US-Shrimp사건에서 이같은 판단순서(sequence of analysis)를 명백히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ABR, *US-Gasoline*, WT/DS2/AB/R, p. 20 ; ABR, *US-Shrimp*, WT/DS58/AB/R, paras. 119-120 참조.

82) GATT 제XX조 (b)호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necessary) 조치.

83) GATT 제XX조 (g)호 :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exhaustible natural resource)의 보존과 관련된(relating to)조치로서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문제의 탄소세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arbitrary)이거나 불공평한(unjustifiable)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조치(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일응(prima facie) 입증해야 한다.⁸⁴⁾

GATT/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제XX조를 예외적인 상황하에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제XX조가 원용된 다수의 판례에서 문제된 된 다수의 판례의 (a)내지 (j)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왔으나, 1996년 미국의 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 표준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문제된 미국의 된 다수의 판례 (g)호에 속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결론을 배척하였다. 이후 EC-Asbestos사건에서는 패널과 상소기구 모두 석 판 및 석 함 이품의 사용을 금지한 프랑스의 된 다수의 판례 (b)호 및 전 사용을 금지한 프개질 및모두 충족하여 판례 (된 다수정당화된다)이품 인정하여 인간 (건강보호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국경탄소세조정을 도입한 국가는 문제의 조치가 GATT규범 위반으로 판정이 날 경우 GATT 제XX조 (b)보다는 (g)호를 원용할 가능성이 높다.⁸⁵⁾ 왜냐하면 (g)호상의 'relating test'요건이 (b)호상의 'necessity test'요건보다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면의 한계상 이하에서는 제XX조 (g)호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국경탄소세조정이 GATT 제XX조 (g)호를 통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조치가 '고갈가능한 천연자원(exhaustible natural resources)'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여야 하며⁸⁶⁾ 'relating to'와 'in conjunction with'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경우.

84) ABR, *U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1996, April 29, p. 22.

85) ICTSD, *supra note* 62, p. 11.

86) US-Shrimp사건에서 상소기구는 '고갈가능한 천연자원'이라는 용어에 대해 'evolutionary' 해석을 채택하였다. 동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exhaustible natural resource'라는 용어가 50년 전에 탄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국가들의 현대 관심사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생물(living resources)뿐만 아니라 비생물(non-living resources)또한 '고갈가능한 천연자원'에 속한다고 결정하였다. ABR, *U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DS58/AB/R, 1998,

한다. ‘relating to’요건에 관해 US-Gasoline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해당조치가 ‘고갈가능한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primarily aimed at)’해야 하며 수단과 목적간의 밀접한 관련성(substantial relationship)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⁸⁷⁾ 이후 US-Shrimp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조치와 정책 목적간의 실제적 긴밀성’(close and real relationship between the measure and the policy objective)이 요구된다고 하였다.⁸⁸⁾ 다음으로 ‘in conjunction with’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국내제한과 수입제한 간에 ‘even-handedness’가 있어야 한다.⁸⁹⁾

이를 적용해 볼 때, 국경탄소세조정이 일견 GATT규범에 위반되는 경우, 동 조치를 도입한 국가가 GATT 제XX조를 인용하여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관련 기후변화법 혹은 규정과 고갈가능한 천연자원⁹⁰⁾인 ‘지구의 대기 혹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기후’(Earth’s atmosphere or climate)를 보존하는 목적간의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며, 문제의 조치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Contribute)함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in conjunction with’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제한과 수입제한간에 ‘even-handedness’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제XX조 (g)호의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였다 하여도, 여전히 두문(chapeau)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제XX조를 통해 GATT위반이 치유될 수 있다. 즉, 문제의 국경탄소세 조정이 고갈가능한 천연자원을 보존하는데 관련된 조치라 해도, 그 조치가 자의적(arbitrary) 혹은 불공평한(unjustifiable) 차별의 수단 혹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조치(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같은 두문규정의 요건과 관련하여 ‘Shrimp-Turtle’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자의적 혹은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을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방적 조

October 12, para. 128.

87) ABR, *US-Gasoline*, WT/DS2/AB/R, pp. 18-19.

88) ABR, *US-Shrimp*, WT/DS58/AB/R, para. 141.

89) ABR, *US-Gasoline*, WT/DS2/AB/R, p. 19.

90) *US-Gasoline*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청정대기(clean air)를 고갈가능한 천연자원(exhaustible natural resources)으로 인정하였다.

치를 취하려는 국가는 관련 WTO회원국의 현지조건을 고려하고 그리고 관련 국가들과 협정체결을 위한 ‘진지하고 포괄적인 협상’(sincere and across-the-board negotiation)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⁹¹⁾ 아울러 또한 문제의 일방적 조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용되어야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⁹²⁾

따라서, 일방적으로 국경탄소세조정을 도입하려는 국가는 GATT규범 위반을 제XX로 정당화하려면 외국의 현지조건(local conditions)을 고려하고 자국과 동일한 온실가스규제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을 필수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일방적인 조치를 도입하기 전에 교역대상국들과 협정체결을 위한 ‘진지하고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국경탄소세조정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용됨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IV. 결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다양한 기후변화조치와 WTO규범과의 상충성을 모두 검토하기보다는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논의 중에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면에서 비용효율적인 조치로 인정되고 있는 ‘탄소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탄소세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탄소누수문제를 우려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기후변화대응 국제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 혹은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소극적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한 일방적인 국경세조정조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WTO규범과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든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탄소세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carbon cost)가 실현되는 것이나, 국가마다 처한 경제

91) ABR, *US-Shrimp*, WT/DS58/AB/R, para. 166.

92) ABR, *U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DS58/AB/R, 1998, October 12, para. 166.

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다르므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실적인 조화방안은 WTO규범 틀 내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방안으로서 GATT 제XX조상의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b)호 혹은 유한천연자원을 보호하는 데 관련된 조치로서 (g)호를 원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GATT이외에 보조금협정, GATS등과 같은 타협정과의 위반문제가 발생할 경우 GATT 제XX조를 통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여전히 탄소세와 WTO규범의 충돌은 해결되지 않는 다 할 수 있다. GATT 1994협정 위반에 대한 정당화규정이므로, 타협정 위반은 치유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기후변화대응정책과 WTO 규범과의 조화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부분에 관한 Chapter를 따로 신설하거나 다자간 환경협정의 무역제한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에 관한 WTO와의 관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정하는 등의 WTO의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경탄소세조정에 대해 일부 국가들은 'green-protectionism'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조치라고 지지하고 있다. 국경탄소세조정이 국가들간 통상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경탄소세조정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 국경탄소세조정과 WTO규범의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수입품에 대한 국경탄소세조정을 정지하는 'Peace Clause'의 도입방안, 혹은 WTO규범하의 복수국간 협정이나 WTO규범 밖에서 '기후와 무역'에 관한 새로운 규범(이를테면 Trade and Climate Code)을 창출하는 방안, 혹은 WTO규범을 개정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다.⁹³⁾

기후변화대응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이며 무역관련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지구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치임을 감안할 때 각국이 도입한, 혹은 새로이 도입할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WTO규정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WTO규범틀 내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WTO규범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GATT 제XX조를 모든 환경조치의 WTO규범 위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 혹은 개정하는 방법, 환경보호규정을 관련 WTO협정에 삽입하는 방법, WTO규범에 우선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을 각료회의를

93) ICTSD, *supra* note 62, p. 12.

통해 결정하는 방법, 의무면제를 받는 방법, WTO환경무역위원회(CTE)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조치들이 WTO규범과의 상충될 가능성으로 인해 타회원국과 참여한 통상마찰에 직면하게 될 경우, 무역자유화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치 모두 훼손되는 비극적인 결말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WTO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각국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 : 2010. 7. 31.	심사일 : 2010. 8. 9.	게재확정일 : 2010. 8. 20.
----------------------	-------------------	----------------------

참고문헌

- 고준성 외 16명,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 구정환, “녹색성장 및 환경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제18권 제3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9.
- 김기흥, 「무역과 환경」, 집문당, 2005.
-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8.
- 김정건 외, 「국제법」, 박영사, 2010.
- 김홍균,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 「법학논총」, 제26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노명준, 「신국제환경법」, 법문사, 2003.
- 류창수, “미국 기후변화 입법상 국경조치의 WTO협정상 적법성 연구”, 「통상법률」, 제93호, 법무부, 2010. 6.
- 성재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제2호, 서울국제법연구회, 1999.
- _____,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주의 원칙”,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1998.
- 소병천, 「국제환경법 용어해설 및 순화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외교통상부,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외교통상부, 2007.
- 유병화, 「국제환경법」, 민영사, 1997.
- 윤창인,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교토의정서」, 유넵프레스, 2002.
- 이로리,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WTO법적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1호(통권 제116호), 대한국제법학회, 2010.
- 이연상, 「쉽게 풀어보는 기후변화협약」, 한올아카데미, 2008.
- 이재면, 「무역과 환경의 연계」, 두남, 2005.
- 이재협, 「환경관련 무역장벽과 기업의 대응전략」,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 이재형, “기후변화협약과 환경세의 국경조정”, 『통상법률』, 통권 제61호, 법무부, 2005.
- 장 신, “국제법상 사전주의 원칙의 법적성격과 그 적용”, 『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1999.
- 한승호,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 : 청정개발체제(CDM)의 이해와 활용』, 한울아카데미, 2006.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국제환경규제 이슈분석 보고서』, 2009.
- Alpay, S., *Trade and the environment : analysis of reciprocal interaction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
- Barack, D. and Gray, K.,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the WTO*, ISD & Royal Institute of Int`l Affairs, 2003.
- Batabyal, A. A. and H. Beladi,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nvironment*, Boca Raton: Lewis Publishers, 2001.
- Baughen, S.,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New York: Routledge-Cavendish, 2007.
- Buttel, F. H., Exploring the gaps: Vital links, between trade, environment, and culture, *Contemporary Sociology—a Journal of Reviews*, vol. 31 no. 1, 2002.
- Copeland, B. R. and M. S. Taylor, *Trade and the environment : theory and evidence*. Princeton seri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 Damian, M. and J. C. Graz,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environment, and the ecological critiqu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53 no. 4, 2004.
- Dandy, N.,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Reconciling trade in biotechnology with environment and development?, *Environmental Politics* vol. 12 no. 3, 2003.

- Eklöf, Göran, *Environment Taking the Back Seat: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WTO* –Church of Sweden, Diaknonia, Forum Syd & Swedish Society for Nature Conservation, 2004.
- Harashima, Y., *Trade and environment negotiations in the WTO: Asian perspectiv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PoliticsLaw and Economics* vol. 8 no. 1, 2008.
- Hassoun, N., *Free Trade and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Ethics* vol. 31 no. 1, 2009.
- ICTSD, *Competitiveness and Climate Policies : Is There a Case for Restrictive Unilateral Trade Measures?*, Information Note Number 16, 2009.
- ISD, *The State and Trade Law and the Environment : Key Issues for the Next Decade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Center for Int'l Environment Law*, 2003.
- James Cameron & Jili Aboucha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 Fundamental Principle of Law and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vol. 14, 1991.
- Sampson, G. P. and J. Whalley, *The WTO, trade, and the environment.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global trading system and the WTO*, Cheltenham, UK ;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ub, 2005.
- Sands, P., *Principl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UNEP, *Trade-related Measures an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2007.
- Vranes, E., *Trade and the environment : fundamental issues in international law, WTO law, and legal theory*, *International economic law series*,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Abstract]

A Study on Possible Conflict between Carbon Taxes
as a Climate-Friendly Measure and WTO Rules

Lee, Young Hee

Carbon taxes are deemed as one of the effective policies to combat climate change. Carbon taxed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purely internal measure which applies to domestic and imported goods in proportion to carbon dioxide emissions; unilateral border carbon adjustment(BCA) ; globalization of carbon costing which means all countries adopt internal carbon taxes. Among theses, unilateral BCA is highly likely to be incompatible with WTO Rules, in particular non-discrimination principle. BCA`s legal basis lies in GATT Article II:2(a), but many relating issues remain unclear including issues of NPR PPMs and inputs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final products such as fuel or carbon. Unilateral BCA on the imported goods originating from non-Kyoto protocol or post-Kyoto regime parties is highly likely inconsistent with GATT Articles III:2 and I. Even though GATT-inconsistent measure can be justified under GATT Article XX, it is difficult for present a complete and documented prima facie case.

In order to avoid BCA issue from serving as a catalyst for escalating trade disputes among WTO members, it is necessary to reach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BCA.

주 제 어 탄소세, 국경탄소세조정,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GATT 1947, 제1조 최혜국대우, 제3조 내국민대우, 동종상품, 제품무관련 PPMs,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Key Words Carbon Taxes, Border Carbon Adjustment, Kyoto Protocol,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GATT1994 Art I, II:2(a) and III, National Treatment, MFN, Like Products, NPR PPMs, GATT Art XX